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복 지 정 책 실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복지정책실

☐ 총 9건 건의

☐ 목 록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노동조합법령 필수 유지업무 개정 건의	복지정책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대도시 재산기준 완화 건의	복지정책과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평가액의 범위 개정 건의	복지정책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5세 이상 ~ 7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개선 건의	복지정책과
5	수급자 선정 통보기간 단축을 위한 금융정보 회신기간 등 절차 개선 건의	복지정책과
6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개선	복지정책과
7	국가유공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복지정책과
8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어르신복지과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어르신복지과

법령 · 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1. 노동조합법령 개정 건의 (복지정책과, '24. 2. 27.)	□ 현황 - 영유아 보육사업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필수 유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파업 참여로 인해 심각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학부모 등 보호자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건의내용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공익사업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필수공익사업 별 필수 유지업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업무를 신설하는 방안(법령 개정)을 건의 □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2	(고용노동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2.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을 위해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 중 대도시 재산기준 완화 요청 (복지정책과, '24. 4. 9.)	☐ 현황 ○ 가구 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다만,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부적합 *예)부모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녀 등 ☐ 문제점 ○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기준이 대도시 특성에 맞지 않게 낮아 별도가구 보장 취지를 살릴 수 없음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적용) <table border="1"> <tr> <td>대도시</td><td>중소도시</td><td>농어촌</td></tr> <tr> <td>3.5억원</td><td>2.5억원</td><td>2.2억원</td></tr> </table> ※비고) '24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 362백만원 ☐ 건의내용 ○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재산기준(3.5억원) 완화 건의 ☐ 관련 규정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수급자 선정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보건복지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3.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추가지원(보훈수당 등)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에 포함되도록 건의 (복지정책과, '24. 4. 9.)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추가지원(보훈수당)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에 포함되도록 하고있음(사업안내 지침).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들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거나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보훈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건의내용 ○ 참전유공자의 합당한 대우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보훈수당 등)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 건의 ☐ 관련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5세 이상 ~ 7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 개선 건의 (복지정책과, '24. 5. 29.)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 7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로기회가 있어도 생계비 감소나 수급탈락 우려로 참여 유인 부족 ☐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 74세 이하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공제율이 30%로 29세 이하*, 75세 이상 및 등록장애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 공제율 적용 *29세 이하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7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건의내용 ○ 65세 이상 ~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율을 75세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년기 건강생활 유도 및 사회적 비용 절감노력 필요 - (현행) 30% ⇨ (개선)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관련 규정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보건복지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5. 수급자 선정 통보기간 단축을 위한 금융정보 회신기간 등 절차 개선 건의 (복지정책과, '24. 5. 29.)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문제점 ○ 수급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결과통보를 원하고 있으나 보장기관에서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회신기한 소요 및 자료 통보 주기로 인해 수급자 선정기간 단축 어려움 호소 -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정보를 회신 받기까지 실제 3~4주 소요, 주거급여를 위한 주택조사는 LH 주택조사원이 실제 거주지 방문조사 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최대 34일 소요 ☐ 건의내용 ○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선정결과 통보 가능토록 금융정보 회신기간 단축 등 절차개선 건의 ☐ 관련 규정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 주기)	보건복지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6.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개선 (복지정책과, '24. 3. 13.)	☐ 현황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은 발병경위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전·공상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실정 ☐ 문제점 ○ 제대 후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로부터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고,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등록 신청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내용 ○ 각 군 본부에서 복무 중 전·공상 심사 시 신청 군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개선 ☐ 관련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7. 국가유공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복지정책과, '24. 3. 13.)	☐ 현황 ○ 현행 법령상 국가유공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문제점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장기 입소대기하고 있음 ☐ 건의내용 ○ 국가유공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관련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8.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어르신복지과, '24. 5. 2.)	☐ 현황 ○ 평균수명 증가, 출산률 감소 등 초고령사회에 있으나,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요양시설 확충은 부진 ☐ 문제점 ○ 초고령사회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시급 - 문화·체육시설, 영·육아 보육시설 등과 다르게, 요양시설의 경우 주민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 건립 추진의 어려움	(국토교통부)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 건의내용 ○ 노인요양시설 설치 관련 규정 마련 (2,000세대 이상 주택개발 시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치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①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 포함(2조)하고, ② 2,000세대 이상일 경우 단지 내 요양시설 설치 의무화(55조의2) - 2,000세대 이상 단지 내 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이 곤란한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대통령령) 일부(2조)만 개정 □ 관련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개 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거. 생략 너 노인복지법 제41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 이하생략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 생략 4. 2,0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9.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제도 개선 (어르신복지과, '24.2.23., '24.2.28.)	□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1.6.30.이후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사망하고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 자치단체 귀속 ※ 시 노인복지시설 유류금품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tr><th colspan="2">합계</th><th colspan="2">'21.6.30 이전</th><th colspan="2">'21.6.30 이후</th></tr><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tr><td>166</td><td>858</td><td>151</td><td>573</td><td>15</td><td>285</td></tr></table> □ 문제점 ○ '21.6.30. 이전 시설에 입소한 사람 또는 잔여재산이 500만원 초과 재산, 사회복지 시설 외 거주한 경우,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법에 따른 상속 절차 이행 - 유류금품의 90%가 '21.6.30.이전 입소자 - 151건 중 125건이 500만원 이하 소액(최소 6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약 300만원), 행정처리 비용(약 80만원)이 잔여재산 보다 훨씬 커 시설에 보관 중인 경우가 많음 □ 건의내용 ○ '21.6.30. 이전 시설입소자의 유류금품 잔여재산 자치단체 귀속 ○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 상향 요청 □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합계		'21.6.30 이전		'21.6.30 이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	858	151	573	15	285	(보건복지부)
합계		'21.6.30 이전		'21.6.30 이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	858	151	573	15	285															